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293번
- 제안자 : 강동길 의원 (찬성자 11명)
- 제안일 : 2020년 2월 5일
- 회부일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주요내용

- 가.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 자립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지역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지
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0.2.17. ~ 2.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정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제정안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제4조부터 제8조는 지원사업(안 제5조), 자립지원센터(안 제6조), 보호연장(안 제7조), 협의체(안 제8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 〉

	조항	조제목	주요 내용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1조	목적	보호종료된 아동·청소년 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본 제정안의 용어를 정의함.
	제3조	다른조례와 관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제정안에 따름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책 수립·시행,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제5조	시책 및 지원사업	지원사업(주거, 취업, 교육, 경제, 인성, 건강, 정서, 후견인제도), 현황 및 실태조사, 위탁 등
	제6조	자립지원센터 등	시장의 설치·운영 및 운영지원
	제7조	보호기간 연장	법령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및 연장 요청
	제8조	협의체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제9조	지도 점검	정기 또는 수시점검 의무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서울시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3,682명(102개 시설)이며 매년 400여명이 퇴소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30명(18개소)의 청소년을 보호 중이며, 연간 퇴소자는 2만 7천명 수준이나,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특성으로 보호기간이 7일(이동·일시쉼터) 또는 3개월 이내의 보호(단기쉼터)가 대다수 인바, 본 제정안에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중장기 보호시설(3년 이내 보호, 최장 4년)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으로 35명 수준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퇴소자는 매년 440명内外의 규모로 추계되고 있음.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

(2020.1.1. 기준)

구 분	계	양육시설 등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수	102개소	42개소	60개소
보호정원	3,682명	3,271명	411명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현황 〉

(단위:명)

구분	3년 평균	총계	2017	2018	2019
총계	408	2,005	404	437	383
가정위탁	170	972	212	188	110
양육시설	216	942	173	225	250
공동생활가정	22	91	19	24	23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2020.1.1. 기준)

구 분	계	일시(고정/이동)	단기	중장기
시설수	18개소	8개소	5개소	4개소
보호정원(명)	230	104	83	35

〈 2019 서울시 청소년 쉼터 입·퇴소 현황 〉

(2019.1.1. ~ 2019.12.31., 실인원, 단위 : 명)

구분	쉼터명	정원			입소자			퇴소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일시	용산청소년쉼터	10	5	5	377	89	288	377	89	288
	드림일시청소년쉼터	10	10	-	212	179	33	212	179	33

구분	쉼터명	정원			입소자			퇴소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이동	강북드림청소년쉼터	10	10	-	147	142	5	147	142	5
	은평구청소년쉼터	10	-	10	248	-	248	241	-	241
일시 소계		40	25	15	984	410	574	977	410	567
이동	서북이동쉼터	15	7	8	6,796	3,435	3,361	6,796	3,435	3,361
	서남이동쉼터	15	7	8	8,057	3,714	4,343	8,057	3,714	4,343
	동북이동쉼터	10	5	5	7,285	3,383	3,902	7,285	3,383	3,902
	동남이동쉼터	14	7	7	10,481	4,363	6,118	10,481	4,363	6,118
이동 소계		54	26	28	32,619	14,895	17,724	32,619	14,895	17,724
단기	신림단기청소년쉼터	20	20		142	142	0	123	123	0
	금천단기청소년쉼터	20		20	177		177	178		178
	망우단기청소년쉼터	20	-	20	107	-	107	90	-	90
	강남구단기청소년쉼터	15	15	-	81	81	-	71	71	-
	강서단기청소년쉼터	49	49		41	41		43	43	
단기 소계		124	84	40	548	264	284	505	237	268
중장기	신림중장기청소년쉼터	10	10		4	4		5	5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8		8	12		12	13		13
	은평중장기청소년쉼터	10		10	19		19	11		11
	어울림청소년쉼터	7		7	7		7	6		6
중장기 소계		35	10	25	42	4	38	35	5	30

-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은 보호단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혼란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호 종료된 청소년 등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보호 종료 청소년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함께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규정하는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퇴소 청소년 등'으로 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정의된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정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제3호에서 '퇴소아동'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와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법령에서 규정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으며,

보호연장(고교 및 대학 재학, 직업훈련) 등으로 퇴소연장한 자를 다시 아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용어 적용에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시행될 「청년기본법」(2020.2.4. 제정, 2020.8.5. 시행)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보호 대상의 명칭과 연령의 상이함으로 인한 착오나 오인 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 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아동시설의 보호연장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만 18세도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퇴소하지 않으며, 고교 졸업 후에도 대학진학,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시설 등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호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 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9세~24세)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퇴소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명칭 또는 순화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칭으로 인한 용어혼란 및 낙인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적,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안 제5조는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이하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주거·생활·교육·취업·자립정착금·의료지원·문화·예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동(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평생교육국), 청년(청년청) 등으로 각 실국의 사업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복 연령대를 설정하여 과도기적 시기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각 부서 간 ‘연령대 중복 사업’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 확보, 효율적인 공적서비스 전달 등을 위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복지시설 퇴소자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자치구, 민간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복지시설의 퇴소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 일자리, 자산형성, 건강, 사회적·심리적 지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의원발의로 의회 의결을 통하여 조직을 신설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 침해는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의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여성가족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단,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을 운영하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서는 시설퇴소자를 위하여 자립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각 부서별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목적과 대상은 유사하나,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이를 통합운영 또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의 주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비중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실에서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아동자립지원단 운영지원 〉

- 사업목적 :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 사업내용 :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자산형성 · 관리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실태조사 · 연구 및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
- 시설현황
 - 소재지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층(공덕동) ☎ 02-779-1443
 - 설치일(개소일) : 2006. 1. 1.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최초 위탁 : 2013.1.1.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대표 최성수)
- 2019년 예산 : 31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019.9월말) :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실인원 2,989명, 연인원 7,218명

〈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 〉

- 사업목적 : 자립기반이 미약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자립정착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시설 현황 : 총 20개소(2015년 설치 10개소, 2016년 설치 10개소)

※ 「자립형 그룹홈」 개념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 뿐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입주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자 또는 연장아동인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자
 - 설치방법 : 시에서 시설퇴소아동이 선호하는 주택(아파트)을 매입
 - ※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서울시청에 소유권 이전등기, 단 1개소는 전세주택
 - 규모(전체면적) : 60~109m²(18~32평형)
 - 운영기관 : 자치구 또는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투입예산 : 6,285백만원(복권기금 100%)
 - 2015년 2,790백만원, 2016년 3,495백만원

〈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

- 사업목적 : 시설 · 가정위탁 아동 등의 양육기~퇴소 후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아동 욕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자립, 위기대응 등을 지원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추진배경 :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시설퇴소로 갑작스런 보호단절을 겪는 아동의 심리적 혼란 및 사회 부적응 문제 발생, 보호필요아동 자립지원체계(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 간 연계 · 조정 및 퇴소 후 완전자립 시까지 체계적 지원 필요

□ 추진경과

- 2017.3~2017.1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 2018.5.~2018.8 시설생활아동 자립지원 자문TF 운영
 - 5개 분과(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아동양육, 자립지원, 재원 · 퇴소아동)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3,809.56m²)
- 사업기간 : 2019.1.1.~2020.12.31.(2년 간)
- 추진방법 : 시립꿈나무마을 내 도티기념병원을 리모델링하여 건립
- 총 사업비 : 5,37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안 제7조는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을 통칭한 ‘퇴소청소년 등’이라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퇴소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시장이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1항),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2항).

○ 「아동복지법」은 일정 연령(18세)에 도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된 경우 시장이 대상자를 퇴소시키도록 강행규정하고 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에서 시장이 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강행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만,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2조제3호의 퇴소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보호시설 또는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또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수정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의 연장조치가 아니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본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의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본 제정안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18세에 달한 자'라는 퇴소기준은 「아동복지법」의 전신인 「아동복리법」의 제정(제정 1961.12.30., 시행 1962.1.1.) 시기인 1961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며,

※ 아동복리법의 퇴소기준

최초 1961년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의 퇴소기준을 정하였고, 20년간 미개정상태였으나,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하였으나, 18세 퇴소 기준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기준이 되고 있음.

· 舊「아동복리법」(1961.12.30. 제정, 1962.1.1. 시행)

제2조 (아동 및 임산부) ①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11조(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한 조치) ①제9조제4호의 교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그 시설의 장이 교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소의 조치를 취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퇴소시킬 수 있다.

· 舊「아동복지법」[1981.4.13.전부개정, 법률 제3438호]

제16조(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 현대의 18세는 진학 또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원 종료’보다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로 보이는바, 본 제정안의 상위법령 부합 여부를 판단 시 60년 전 제정된 기준 뿐만 아니라 법령의 보호연장 취지 및 현 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 시대상을 반영할 대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연령의 상향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등 실제 효과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정부 건의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본 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과 청년 지원을 위해 보호기간 연장, 보호·지원 기구설치 등 필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제정안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청년 등 담당 부서 간 긴밀한 정책협의와 함께 사업조정, 전문인력, 예산, 조직 등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성장과정에 있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육성,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며,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과다 분화된 조직(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통합·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